

## 감리지적 사례 FSS/2008-12 :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

- 쟁점 분야: 수익인식
- 관련 기준: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
- 결정일: 2017년
- 회계결산일: '13.1.1.~'15.12.31.

### 1. 회사의 회계처리

A사는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, 공사진행률 및 공사수익 산정시 경비 및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만을 공사예정원가 및 누적공사원가로 집계하였다. 회계기준에서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,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 등을 공사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, A사는 원가 집계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, 관행적으로 재료비만을 공사예정원가 및 누적공사원가로 계속 집계하였다.

그 결과 '13년~'15년 기간 중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고 관련 주석에 누적공사원가를 과소 기재하였다.

### 2.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

A사는 경비 및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만을 공사예정원가 및 누적공사원가로 집계하여 공사진행률 및 공사수익을 산정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고, 공사계약 관련 주석에 누적공사원가를 과소 기재하였다.

### 3.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

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11호(건설계약) 문단16 및 문단17 등에 따르면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에는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원가, 건설에 사용된 재료원가 및 계약에 사용된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등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동 사례의 경우 A사가 공사예정원가에 경비 및 노무비를 제외함에 따라, 금융감독원은 A사의 공사진행률 및 공사수익이 왜곡되었다고 판단하였다.

### 4. 감사절차 미흡사항

① 회계감사기준 200(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) 및 500(감사증거)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,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

한다. 또한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고,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‘13~‘15년 기간 중 직접경비 및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진행률 적용시 (누적)공사수익 및 주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,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단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.

## **5. 시사점**

회사가 경비와 노무비를 프로젝트별로 배분하는 원가집계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고 재료비만으로 공사진행률을 산정하고 있었으나, 감사인은 공사진행률 산정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, 경비 및 노무비가 공사수익 산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.

따라서 감사인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달리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는 회사의 주장만 신뢰하지 말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진행률 산정오류 등으로 당기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.